성주군 정보공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이행으로 「성주군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여 정보공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의 목적 등 (안 제1～3조)

나. 정보공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4～8조)

다. 정보공개 수수료 (안 제9조)

라. 정보공개 심의회에 관한 사항 등 (안 제10～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26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조, 제17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2021. 11. 23. ~ 2021. 12. 13.

라. 규제심사 : 미래전략담당관-3834(2021. 11. 19.)

마. 성별영향평가 : 가족지원과-48512(2021. 11. 19.)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정보공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주군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성주군(이하“군”이라한다) 본청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및 배부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란 정보의 생산 및 관리,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등 정보공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사전정보 공개) ① 총괄부서는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는 법 제7조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 시기,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총괄부서는 청구된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처리부서는 업무 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로 지정한다.

1. 청구내용의 업무관련성이 많은 부서
2. 청구내용의 우선순위로 요구된 정보를 처리하는 부서

제7조(즉시공개) ①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 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정보
4. 공개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 할 수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수납은 일반적인 청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한다.

제8조(비공개 결정)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항 및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편요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며, 수수료 금액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제10조(정보공개 심의회) 법 제12조에 따라 성주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1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성주군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4명으로 위촉한다.

④ 심의회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괄부서는 심의회 의결서를 처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는 심의회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위원들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인, 제3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엄수)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위원은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이하 “지방자치정보”라 한다)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의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범위)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12. 22.>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부담)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성주군 정보공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총무과 총무담당 석 도 경